

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(김경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64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11일

발 의 자 : 김 경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권수정, 김기대, 김기덕,
김제리, 김태수, 김평남,
박기열, 박기재, 박상구,
박순규, 성흠제, 송명화,
송아량, 양민규, 이광호,
이영실, 이정인, 임종국,
장상기, 전석기, 최웅식,
홍성룡, 황규복 의원(23
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진 지방정부청사 내부에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공간이 부족해 근무시간 내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이슈된 바 있음.

오래전부터 정부청사나 대학과 같은 공공건물에서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휴게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,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한 실정임.

이에 현행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서울시 소속 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 여건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규정함.(안 제8조제8호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산업안전보건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II.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사업주의 협조) 제3조의 적용 대상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,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8. (생략)</p>	<p>제8조(사업주의 협조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</u></p> <p>9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p>